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9
----------	-----

2019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이병도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도 의원)

### 1. 제안이유

- 좋은 돌봄 인증업무의 효율성과 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인증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을 명시함.
-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해 줌으로써 근무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 인증기관 지원 내용에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 인증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좋은 돌봄 인증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이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한정되어 있는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 인증기관에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의 부재로 인한 시설업무 공백의을 최소화를 통한 근무 환경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인증심사기관 확대(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 ① ----- ----- -----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의 공신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에 관련시설의 평가심사 및 인증을 의뢰하였으나,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치매전담시설 등 향후 시설인증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안의 인증심사 기관 확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는 좋은돌봄 인증사업 평가 기관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를 근거로 서울시복지재단을 예시규정으로 조례상 반영을 요청하였음.
  - 본 조례의 제정이유가 서울형 인증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였으며, 2009년 서울형 인증제 도입 이후 서울시 방침 규정에 의해 인증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며, 그러한 인증 평가업무를 서울시 복지재단이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이지만 현행 조례와 같이 서울시의 평가 및 심사업무를 독점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인증심사 기관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의 전문성은 불확정개념임으로 사실상 집행부의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바,
  - 서울시복지재단을 예시 규정으로 명시할 경우, 그 전문성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나. 인증기준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서울형 인증 지표 및 인증기준은 그동안 지침으로 인증지표 세부기준으로만 있었으나, 인증기준을 조례에 예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좋은돌봄인증을 명확화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개정안은 인증심사 기준에 대한 필수적 기준을 구체적

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그 외의 명시되지 않은 인증 기준  
(다음표 참조: 서울형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의 경우에도 예시규정의  
특성상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음.

### 서울형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2 분야 5 영역 21 지표 (37 세부지표)		2 분야 5 영역 24 지표 (36 세부지표)		
I. 필수이행 영역		I. 필수이행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기관의 비전</li> <li>②전문인력</li> <li>③윤리경영</li> <li>④재정회계 관리</li> <li>⑤영양 서비스</li> <li>⑦안전관리</li> <li>⑧인권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센터의 비전</li> <li>②전문인력</li> <li>③윤리경영</li> <li>④재정회계 관리</li> <li>⑤서비스계획</li> <li>⑦송영서비스</li> <li>⑧안전설비</li> <li>⑨사고대책 마련</li> </ul>		
II . 기 본 이 행 영 역	기본요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인적자원</li> <li>②시설 환경</li> <li>③윤리경영</li> <li>④지역사회 연계</li> </ul>	기본요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인적자원</li> <li>②시설 환경</li> <li>③윤리경영</li> </ul>
	맞춤돌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서비스 계획과 평가</li> <li>②영양 서비스</li> <li>③의료재활 서비스</li> <li>④퇴소지원</li> </ul>	맞춤케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서비스계획·평가</li> <li>②영양서비스</li> <li>③치매대응전략</li> <li>④송영서비스</li> <li>⑤신체기능 돌봄</li> <li>⑥인지기능 돌봄</li> <li>⑦야간이용 서비스</li> </ul>
	안심돌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안전관리</li> <li>②재해 및 화재관리</li> <li>③응급상황 관리</li> <li>④감염병 관리</li> </ul>	안심케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응급상황 관리</li> <li>②위생청결서비스</li> <li>③건강체크 시스템</li> </ul>
	인권보호 (2)	①이용자 보호	이용권보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서비스 안내</li> <li>②가족지원 서비스</li> <li>③이용자 권리보호</li> </ul>

다. 대체인력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

현행	개정안
<p>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시장이 정하는 인증의 표시</p>	<p>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p>

- 개정안은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의 부재(질병, 휴가 등)로 인한 시설업무의 공백 및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위 대체인력 근거 규정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에 대한 실질적 좋은 돌봄 양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인증의 표시(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0조의2(인증의 표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위 개정안은 인증기관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기관별로 자의적인 인증 표시의 남발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시장에 의한 인증의 통일성 확보와 이를 통한 인증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 및 공신력 확보 등을 감안할 때 같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의 공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출되었는



바,

- 서울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심사 및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복지재단에 위임하였던 관련시설의 평가 및 인증심사 기관을 관련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치매전담시설 등 향후 시설인증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안의 인증심사 기관 확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형 인증 지표 및 인증기준은 그동안 지침으로 인증지표 세부기준으로만 있었으나, 인증기준을 조례에 예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좋은돌봄인증의 기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준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을 내실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 사료됨.
- 본 개정안은 인증기관에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의 부재로 인한 시설 업무의 공백 및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에 대한 실질적 좋은 돌봄 양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형 좋은돌봄의 안정화 및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등 돌봄서비스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겨지는 바,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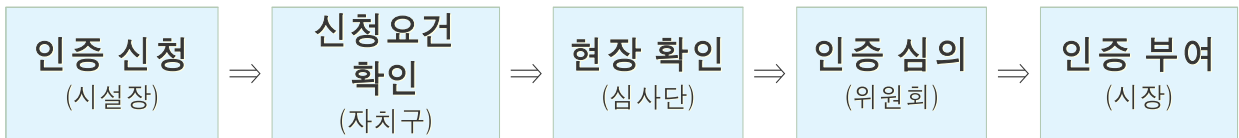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 지원 관련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대상기관: 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 ※ '19년 방문요양 시범실시, 5개소 내
- 인증지표: 인권보호, 시설안전, 재무건전성, 위생, 종사자 처우 등 운영 및 서비스 전반

구분	서울형 데이케어 인증	서울형 의료복지시설 인증
도입시기	2009년부터	노인요양시설 '15년, 공동생활가정 '16년부터
인증대상	17인 이상 주야간보호시설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지표	2분야, 5 영역, 24 지표, 36 세부지표	2분야, 5 영역, 21 지표, 37 세부지표
심의기준	4개 대영역 평균 80점 이상	4개 대영역 평균 80점 이상

- 인증절차



- 인증기간: '좋은돌봄인증' 유효기간 3년
- 지원내역: 234개소(데이케어센터 18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8개소) 6,111백만원 지원
  - ▶ 데이케어센터 5,607백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504백만원

##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지원사업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 주·야간운영 보조금: 시설규모, 이용자 수, 설치 유형별 차등 지원
- 환경개선·복지지원비: 최초 인증시 1회 지원(인증 B·I, 현판 제작, 직원연수 등)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돌봄(직접)종사 상근인력 교육·연가시 지원(1인당 3일)

### 《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17~21인		22~28인		29~35인	36인 이상
	단독	병설	단독	병설		
주간운영 보조금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환 경 개 선 비	8,000		9,000		10,000	10,000
야간운영 보조금	5~10인				11인 이상	
	26,000				36,000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 정원규모별 차등지원: 4 ~ 24백만원(연1회 지원)
- 지원금 용도: 환경개선, 대체인력, 종사자복지지원, 전문프로그램비

### 《 서울형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

(단위: 천원)

정원규모	인증지원금	필수 지출항목
9 인 이 하	4,000	- 환경개선비: 신규인증시 1회, 규모별 차등지원 ▶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환경 보완 등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 연 3일 이내) ▶ 종사자의 휴가, 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사용 등
1 0 ~ 3 0 인	10,000	
3 1 ~ 6 0 인	12,000	
6 1 ~ 9 9 인	14,000	
1 0 0 ~ 1 4 9 인	16,000	
1 5 0 ~ 2 4 9 인	20,000	
2 5 0 인 이 상	24,00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참석위원 찬성 9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89
----------	-----------

제안년월일 : 2018년 6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인증심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심사요건을 갖춘 기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도와 전문성, 공신력 등과 관련하여 예시적인 기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

##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전문적인”을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으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 대비표(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u>전문적인</u>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8조(인증심사) ①----- ----- ----- <u>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u>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